



제1713호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	례 제 1920 호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건 축 과	2
○ 조	례 제 1921 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 획 예 산 과	4
○ 조	례 제 1922 호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 획 예 산 과	7
○ 조	례 제 1923 호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 획 예 산 과	16

공 고

○ 공	고 제 1861 호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복 지 정 책 과	22
○ 공	고 제 1862 호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입안을 위한 공고 열람	도 시 재 생 과	32

회 람								
--------	--	--	--	--	--	--	--	--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0월 11일

남동구 조례 제1920호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2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이 지상 3층인 경우로서 3면 이상이 인접 건물에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건축물관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허가 확대 대상 규정을 신설하여 해체 건축물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을 정함(안 제8조의2)
 - 일정 반경 내 특정한 시설물의 종류를 정함(안 제8조의2 제1항)
 - 일정 폭 이상의 도로를 정함(안 제8조의2 제2항)
 -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한 경우를 정함(안 제8조의2 제3항)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0월 13일

남동구 조례 제1921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313명” 을 “1,330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285명” 을 “1,302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313명” 을 “1,330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1,330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325					
2급	1	1				
4급	8	6	1	1		
5급	69	38	2	8	1	20
6급 이하 계	1,247					
별정직 계	4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3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에 대한 정원 증원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1,313명 ⇒ 1,330명 (증 17명)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안 제4조 별표 3) 일부 변경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1,313→1,330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308→1,325					
2급	1	1				
4급	8	6	1	1		
5급	69	37→38	2	9→8	1	20
6급 이하 계	1,230→1,247					
별정직 계	4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3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0월 13일

남동구 조례 제1922호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나. 휴업·폐업 신고 다. 시정명령 등 라. 개설허가의 취소 등 마. 보고와 업무 검사 등 바. 조산원의 지도의사 신고 사. 의료지도원 임명 아.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자. 과징금 처분 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92조	보건소장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나. 지도·감독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3. 안마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점검 다. 행정처분	「의료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같은 규칙 제9조	
	4.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등 나. 치과기공소 폐업 등의 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5.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나.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및 휴·폐업 신고 수리 다. 안경업소의 지도·감독 라. 안경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및 개설 등록의 취소 등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보건 소장
	6. 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 가. 약국 개설등록 나. 폐업, 휴업, 재개업 및 변경신고 다.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약사법」 제20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76조	
	7. 대마재배에 관한 권한 가. 허가 및 허가사항변경 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8.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관한 권한 가.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 나.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다. 과징금 처분 라. 청문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9.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권한 가. 시체해부 나. 시체해부 명령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제6조	
	10.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업무 나. 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 업무 다. 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 관한 업무 라. 과태료 부과·징수 마. 금연을 위한 조치 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사. 보건교육의 실시 등 아.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자. 영양지도원에 대한 임명 차. 구강건강사업에 관한 업무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카.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제19조	보건 소장
	11. 감염병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나.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다.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라.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마.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바. 감염병병원체 검사·보존·관리 및 약제 내성감시 사. 건강진단 아.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자.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차. 오염장소등의 소독조치 카. 감염병의 예방조치 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파.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하.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거.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너.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 등 더.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37조	
	12.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나.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다. 소독업무의 대행 명령 라. 소독업자에 대한 기타 행정처분 마. 영업의 정지명령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59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13.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업무중사의 일시 제한 및 재취업 나. 입원명령 다. 결핵환자등의 의료 라. 결핵 집단 발생시의 조치 마. 결핵검진 바.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결핵예방법」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9조	보건 소장
	1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수립 나. 검진 및 역학조사 다. 치료권고 라. 치료 및 보호조치 등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같은 법 제8조 및 제10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15. 감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 나. 예방접종의 공고 다. 예방접종증명서 라.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마.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16.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모자보건수첩 발급 나.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 관리 등 다. 피임약제 등의 보급 라. 과태료 부과·징수	「모자보건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17. 암관리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암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	「암관리법」 제5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18.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나. 비용의 지원	「치매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제18조	보건 소장
	19.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시 건강진단 실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제3조	
	20.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탁물 처리업 신고 나. 지도 및 보고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같은 규칙 제11조	
	21.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 한 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다. 정신의료기관 허가취소 또는 폐쇄 라. 과징금처분 마.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등 바. 청문 사.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등 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차. 외래치료 명령 및 지원 등 카. 보고·검사 등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44조 및 제6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제56조 및 제57조 같은 법 제59조 및 제64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89조	
	22. 의료인 단체 설치신고	「의료법」 제28조	
	23.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사회건강조사 계획수립 및 실시	「지역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24. 산후조리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점검 다. 행정처분	「모자보건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보건 소장
	25.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점검 다. 행정처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26.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검진 실시 나. 급여비용의 예탁	「의료급여법」 제14조 같은 법 제27조	
	27.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등록변경 등 나. 검사결과 통보 수리 및 등록대장 관리 다. 시정 명령	「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의료법」 제63조	
	28.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나. 폐업·휴업·재개 신고수리 다.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등 라. 폐기 명령 등 마. 등록 취소, 청문 바. 약사 감시원의 임명 및 배치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 같은 법 제44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6조의3, 제77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29.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라. 응급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 응급 의 료시설 설치·운영 마.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바. 구급차등의 사용금지 사. 구급차등의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 아. 의료기관 및 구급차운용자의 업무정지등 처분 자. 청문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보건 소장
구청장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명령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8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구청장 (재무과)	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 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조직 개편에 따라 보건소 소속 부서를 구 본청 소속으로 변경하고, 보건소장에 위임한 사무 중 일부를 삭제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안 제2조 별표 2) 삭제
 - 보건소 식품위생과를 구 본청 소속으로 변경하고,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식품위생과 소관사무 삭제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0월 13일

남동구 조례 제1923호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장 및 실·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을 “(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담당관·과장” 을 “실·과장” 으로 한다.

제3조 중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을 “홍보실” 로,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을 “행정국, 재정경제국, 복지국” 으로, “도시건설국” 을 “도시국” 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대변인)” 을 “(홍보실)”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변인” 을 “홍보실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셜미디어 운영사무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 를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로, “미디어정보과” 를 “정보통신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제18호 및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 제

8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래 국가어항 개발 및 소래 정비사업 추진

9.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제7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를 “행정국에 총무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제8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세무과, 세입징수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10조)의 제목 “(주민복지국)”을 “(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복지국”을 “복지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및 자동차관리과”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및 식품위생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사무

18. 식품위생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관한 사무

19.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제11조(중전의 제12조)의 제목 “(도시건설국)”을 “(도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건설국에 도시재생과, 공영개발과, 건설과, 방재하수과”를 “도시국에 도시재생과, 도로과, 치수과, 도시디자인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제11조(종전의 제12조)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도시경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11.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12.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불법 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제13조 앞에 “제3장 직속기관 (보건소)” 를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직속기관 (보건소)” 를 삽입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제2항 중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및 식품위생과” 를 “건강증진과 및 치매정신건강과” 로 한다.

제16조 앞에 “제4장 사업소” 를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제4장 사업소” 를 삽입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제19조 앞에 “제5장 하부 행정기관(동)” 을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제5장 하부 행정기관(동)” 을 삽입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가목 중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을 “홍보실” 로, “자치행정국” 을 “행정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주민복지국,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을 “복지국, 환경교통국, 도시국” 으로 한다.

②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국장

③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을 “행정국장, 복지국장” 으로 한다.

④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을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으로 한다.

⑤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 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

⑥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을 “행정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 을 “행정국장” 으로 한다.

⑦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 을 “도시국장” 으로 한다.

⑧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 을 “도시국장” 으로 한다.

⑨ 「남동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도시건설국장” 을 “도시국장” 으로 한다.

⑩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미디어정보과” 를 “정보통신과” 로 “건설과” 를 “도로과” 로 한다.

⑪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 중 “세무과” 를 “세무1과” 로 “세입징수과” 를 “세무2과” 로

“건설과”를 “도로과”로 “도시경관과”를 “도시디자인과”로 하고,
별표 3 중 “도시경관과”를 “도시디자인과”로 한다.

⑫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방재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⑬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세입징수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세무과장, 세입징수과장”을 “세무1과장, 세무2과장”으로
한다.

⑭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⑮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세무과장, 세입징수과장”을 “세무1과장, 세무2과장”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구 분	개편 전	개편 후	증감
구 본 청	6국 2실 1담당관 34과	6국 2실 35과	증) 1과 감) 1담당관
의회사무국	1사무국	1사무국	
직속기관	4과 1센터	3과 1센터	감) 1과
사업소	1사업소	1사업소	
동 주민센터	20동	20동	

○국 조정

- (명칭변경) 자치행정국 → 행정국 / 주민복지국 → 복지국 / 도시건설국 → 도시국

○ 부서 조정

- (명칭변경) 대변인 → 홍보실 / 미디어정보과 → 정보통신과 / 세무과 → 세무1과 / 세입징수과 → 세무2과 / 도시경관과 → 도시디자인과 / 공영개발과 → 미래전략과 / 건설과 → 도로과 / 방재하수과 → 치수과
- (폐 지) 소통협력담당관

○ 부서 소속 변경 : 도시디자인과 (환경교통국 → 도시국)

미래전략과 (도시국 → 정책기획국)

식품위생과 (보건소 → 환경교통국)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2 - 1861 호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강화를 위한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구수정(안 제1조)
- 자구 수정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상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 자구 수정(안 제8조)
-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의 구체적 규정 마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 연 락 처 : 전화 032-453-2503, FAX 032-453-257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4. 참고자료

-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10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강화를 위한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구 수정(안 제1조)
- 자구 수정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상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 자구 수정(안 제8조)
-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의 구체적 규정 마련
(안 제11조)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1861호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6항”을 “법 제41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 및 단체에 대해서는 시상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협의체”를 ““각 협의체””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직원)”을 “(사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를 “사무국을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이 아닌 정규직(무기계약직) 팀장 1명과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 팀장 및 직원은 협의체 소속으로, 민간공동위원장이 채용한다.

제11조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원”을 “사무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 및 제8항----- ----- ----- ----- -.
제6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u>법 제41조제6항</u> 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② ~ ④ (생략) <u><신설></u>	제6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u>법 제41조제7항</u>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 및 단체에 대해서는 시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이하 <u>각 협의체</u> 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 4. (생략)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 “ <u>각 협의체</u>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제11조(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
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신설>

② 직원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1. ~ 3.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사무국) ① -----

-----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이 아닌 정규
직(무기계약직) 팀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 팀장 및 직원은 협의체
소속으로, 민간공동위원장이 채용
한다.

④ 사무국-----
-

1. ~ 3.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
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⑧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7. 9. 21.>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9. 21.>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7. 9. 21.>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862호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입안을 위한 공고 · 열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12.

남 동 구 청 장**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53-4번지 일원
- 결정(안) 주요내용
 - 공공청사(간석1종 행정복지센터)신설: 998.3㎡
 - ※ 효율적인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청사 신축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입안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제출

3. 열람 장소

-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2, 남동구 소래로 633)

4. 관계 도서: 게재 생략 (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